

# 대구예술대학교 학생상별규정

(개정 2010.08.02.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19.12.30. 교무위원회)

(개정 2022.08.01. 교무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1장에 의거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및 운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한다) 학생상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12.30.)

1. 위원회 구성은 총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간사는 학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08.01.)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기능)** 우리 대학교 학생상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학칙 제56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우리 대학교에서 발생한 상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포상)** 학생이 학칙 제56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1. 모범상 : 타 학생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2. 공로상 : 학교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력이 탁월하며 학생 자치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3. 최우수상 : 각 전공별 우수상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1명 선정
4. 기타 포상의 의의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전호 1,2,4호에 해당되는 포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대학교 학생상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포상할 수 있다.
6. 포상 부분 및 선정 기준은 별지 제1호에 의한다.

**제5조 (포상 발의)** 제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의 서식에 의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1. 표창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 조서(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징계)** 학칙 제57조에 의거 학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7조 (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일 이상 7일 미만의 근신에 처한다.

1.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자

2. 학생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자
3. 면학 분위기를 흐리게 한 자
4. 2회 이상 경고 자
5. 기타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제8조 (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7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1.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자
3. 단체 행사를 교란하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동조한 자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단, 정상에 따라 시험과목 중 해당 과목의 학점 취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5. 기타 제8조 각 호 마다 심한 상태의 학생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제9조 (무기정학)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1개월 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이유 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
  3. 학우에게 집단 폭행을 한 자
  4. 교내. 외에 허가를 득 하지 아니하고 공고.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5. 고의로 학교 시설을 파괴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자
  6. 시험 중 대리 응시를 한 자와 이를 응시토록 주선한 자 (단, 당해 학기 수강하는 과목의 일부 또는 전 과목의 학점 취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7. 학생회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8. 기타 제9조 각호 보다 심한 상태의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자
- ②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자의 징계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도교수 지도 결과 보고서를 첨부, 당해 학부장 및 전공주임 발의에 의하여 총장이 정상을 참작하여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08.01.)

**제10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3. 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4. 교내에서 붙은 공고나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5.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당해 교직원의 위신을 심히 추락시킨 자
6.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7. 학교 당국의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한 자
8. 성향이 불량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1조 (징계 절차) 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1호에서 6호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사건 경위서
2. 비위 사실 진술서(별지 제4조 서식)

3. 징계 혐의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4. 징계 사유 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
5. 징계 혐의자 주장서(별지 제7호 서식)
6. 징계 의결서(별지 제8호 서식)

② 우리 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에서는 징계 대상 학생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별지 제9호 서식) 또한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③ 학생상벌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하여 징계에 따른 소정의 과제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 상실)**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근신기간 중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 활동의 참여가 금지되고 정학 및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학생으로서 부여받은 모든 권리가 상실 또는 정지된다.(개정 2019.12.30.)

**제13조 (처벌의 감면)** 총장은 징계 중에 있거나 징계를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통보)** 학생처장은 징계 사실을 관계 부서와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고(별지 제10호 서식), 총장에게 징계처분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학적부 등재)** 징계처분 자에 대하여 징계 사항을 학적부에 등재한다.(단, 졸업시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처분 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은 1997년 3월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포상부문 및 선정기준

포상부문	선정기준	비고
우수상	최우수	당해 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우수상대상자중 1명 선정
	우수	당해 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각 학부 전공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학부장 및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22.08.01.)
공로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자치기구 회장, 부회장</li> <li>2.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역임자</li> <li>3. 신문방송국장 역임자</li> <li>4. 권위있는 각종 학술경시대회 입상자</li> <li>5. 권위있는 각종 국가고시 최종합격자</li> <li>6. 기타 포상의 의의가 있다고 인정된 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급자 및 징계처분을 받았던자는 포상심의에서 제외된다.</li> <li>2. 학생간부의 재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li> </ol>
모범상	타 학생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징 계 형 의 자 명 단

번호	성 명 (한 자)	소 속 학부/전공 학년	학 번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징 계 사 유
	( )			
	( )			
	( )			
	( )		☎ (D.D.D - )	
	( )			
	( )			
	( )			
	( )		☎ (D.D.D - )	
	( )			
	( )			
	( )			
	( )		☎ (D.D.D - )	
	( )			
	( )			
	( )		☎ (D.D.D - )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2.08.01.)

징계사유설명서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소속	학부/전공 학년			입학년도	
직책				출신고교	
본적				보호자	
주소				전화	
적용학칙 및 상벌규정					
징계사유					

## 징계 혐의자 주장서

1. 소속 : 학부/전공 학년 학번 :

2. 주민등록번호 :

3. 성명 : (인)

20 . . .

대구예술대학교 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인의 징계 요구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징계의결요구사유	혐의자 주장	비고 (증거서류목록등)

징 계 의 결 서

소 속	학 번	성 명	주 소
학부/전공	학년		
징 계 의 결 주 문	에 처한다.		
징 계 의 결 사 유			

위와 같이 징계의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구예술대학교 상벌위원회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출 석 통 지 서

인적 사항	성 명	(한자 : )	학 번	
	소 속	학과 학부/전공	학년	주민등록번호
출석 이유				
출석 일시				
출석 장소				
유의 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는 상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 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대구예술대학교 학생상벌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 . .  대구예술대학교 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성 명	(한자 : )	학 번	
	소 속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 . .  대구예술대학교 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				



